

01

FTA 동향

- ① 농림축산식품부, 커피 원두값 75% 폭등에 ‘인스턴트 커피 관세 0%’ 추진
- ② 산자부, “영국에 삼계탕·냉동치킨 수출”…검역 절차 마무리
- ③ 농식품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 ④ 기재부, 이차전자·전기차 소재·부품 HSK 상품코드 신설
- ⑤ 관세청, 우리 수산물 간편하고 편리하게 수출한다
- ⑥ 관세청,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신속 통관 지원”





- ① 농림축산식품부, 커피 원두값 75% 폭등에 ‘인스턴트 커피 관세 0%’ 추진
- ② 산자부, “영국에 삼계탕·냉동치킨 수출”...검역 절차 마무리
- ③ 농식품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 ④ 기재부, 이차전자·전기차 소재·부품 HSK 상품코드 신설
- ⑤ 관세청, 우리 수산물 간편하고 편리하게 수출한다
- ⑥ 관세청,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신속 통관 지원”

FTA 동향 ①

농림축산식품부, 커피 원두값 75% 폭등에 '인스턴트 커피 관세 0%' 추진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2025년부터 수입산 인스턴트커피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커피 이외에도 코코아 생두, 설탕 등 이상기후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의 할당관세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기본 관세율이 8%인 인스턴트커피 수입 전량에 대해 내년 1년 동안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로 정한 커피 생두, 커피 농축액 수입 전량 할당관세 0%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2024년 9월 기준, 인스턴트 커피 수입량은 3,670톤(6227만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소폭(2.1%) 감소했지만 매년 연간 4,600~4,900톤씩 수입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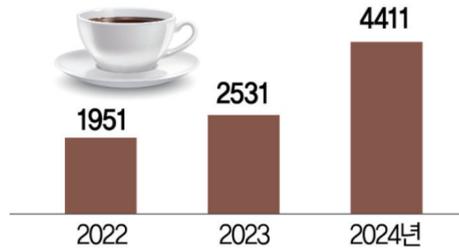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커피(HSK 제2101.11-1000호) 수입 실적

단위: 톤

구분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9월)
	인스턴트 커피	4,688	4,924	4,953	4,799	3,670

자료: Kita 수출입통계

국제 커피 선물 가격 (단위:달러)



※각 해 10월 25일 로부스타 커피 익년 1톤 선물 기준
자료: 런던ICE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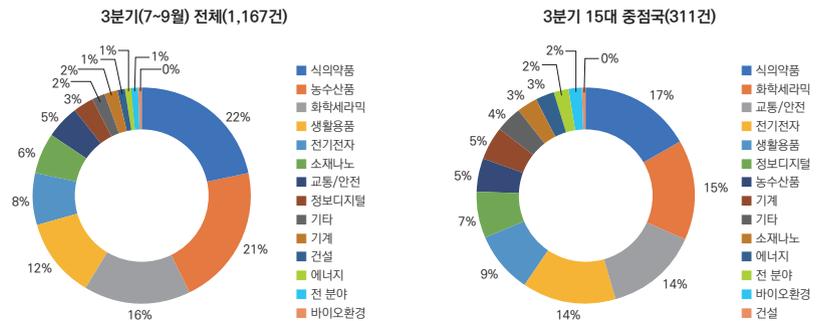
정부가 각종 수입산 커피 상품들의 관세를 면제하고 나선 것은 올해 급등한 커피 원두 가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로부스타 커피 선물 톤당 가격은 2024년 1월 기준 4,411달러로 전년보다 74.3%, 2년 전보다 126.1% 폭등했다. 2024년 9월에는 5,535달러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주요 커피 원두 생산국의 수확량이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설탕, 코코아두, 오렌지 농축액, 토마토 페이스트, 파인애플 주스 등 기후 변화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다른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할당관세를 통한 가공식품 원가 부담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3분기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3,176건...역대 최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3분기 누적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분기 기준 무역기술규제(TBT)는 1,167건으로 전년 동기 898건 대비 30%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누적 건수로도 3,176건을 기록하며 동기간 최다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우간다(122건), 탄자니아(107건)와, 케냐(104건) 등 동아프리카에서 식의약품 및 농수산물 분야 등의 기술규제를 지난 분기 대비 2배 이상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94건)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물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26%)으로 전년(323건) 대비 약간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16.7%), 화학세라믹 분야(15.1%), 교통안전(14.5%) 분야가 상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자동차 및 항공 관련 규제,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주요 수출 산업과 관련된 기술규제 등 94건을 통보했다. 중국은 생활용품, 전기안전 관련 기술규제 등 43건을 통보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식품, 가전기기 관련 등 23건을 통보하



며 지난 분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진중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응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FTA 동향 ③

농식품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사진 : 농심 인스타그램

세계 최대의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국내 식품 업계가 분주해졌다. 선제적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대기업은 본격적인 시장 공략 기회로 삼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증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성장하는 글로벌 할랄 시장이 ‘K푸드’에 새로운 기회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의무화가 2024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에게 허용된 제품을 말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유통·판매되는 식음료는 할랄 인증 여부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고, 비할랄 제품은 정해진 별도 매대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상품 인증 의무는 최대 2년 동안 유예됐다.

하지만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 등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은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과 해외 할랄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한-인도네시아 정부 간 업무협약(MOU), 인증기관 간 할랄인증 상호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 인증 취득지원 등을 추진해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했다”면서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동향 ④

기획재정부, 이차전자·전기차 소재·부품 HSK 상품코드 신설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등에 대한 상품코드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HSK는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것으로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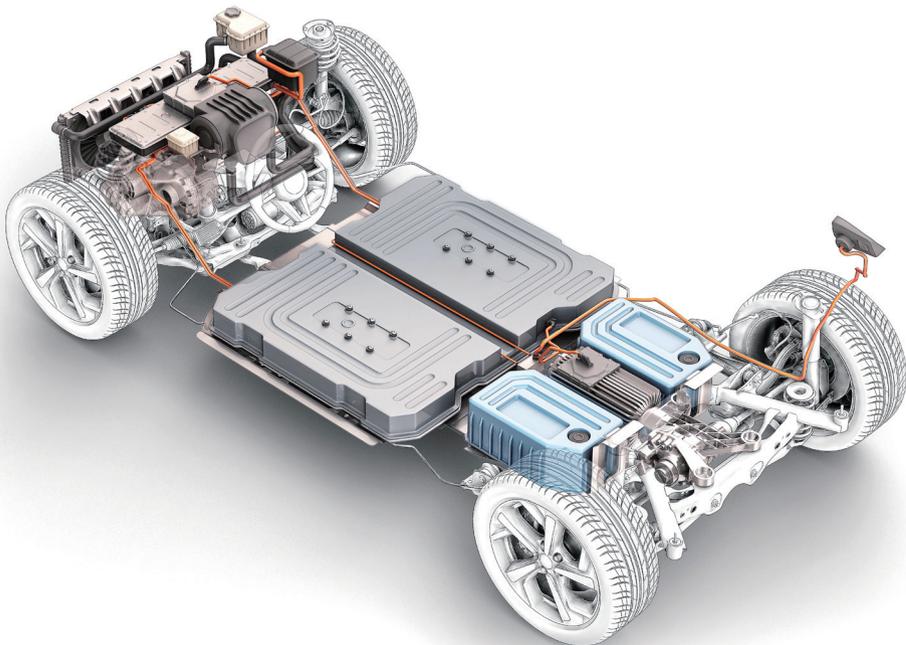




사진 : NEWS1

세분화해 총 10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 통관 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 사항 확인 및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산업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수입 물품이나 먹거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에 따라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및 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 및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코드를 신설한다.

먹거리 안전 및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 유통될 수 있는 남방 먹조기와 점성어 등에 대한 코드도 신설한다.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포레이트(ISO) 같은 독성 살충제의 경우 세분화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초음파 어군탐지기,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과 관련해선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HSK 체계가 부합되도록 오류를 교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통관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홈페이지 : <https://www.moef.go.kr/> → 뉴스 →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
(제목 : “2025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시행 예정”)

FTA 동향 ⑤

관세청, 우리 수산물 간편하고 편리하게 수출한다

관세청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이하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이하 '케이피쉬(K-FISH)') 인증 품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간편인정'은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로,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등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수출 지원을 위해 매년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확대 발굴하고 있다.

한편, '케이피쉬(K-FISH)'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개발·운영 중인 상표로, 원산지 확인은 물론 사용 승인부터 관리까지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 식품에만 부여된다.





관세청과 해양수산부 양 부처는 올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복·마른김·미역 등 케이피쉬(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11개 인증 품목 16개 종(39개사, 59개 상품)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하여 케이피쉬(K-FISH) 인증 품목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되는 ‘케이피쉬(K-FISH) 인증품목’ 및 인증서류

케이피쉬(K-FISH) 11개 품목, 16개 종류	활납치·광어, 활전복, 전복(건조·염장·염수장·훈제한 것), 전복(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김(건조한 것), 해삼(건조한 것), 굴(냉동한 것), 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붉은 대게살(냉동한 것), 붉은 대게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봉장어 필레(신선·냉장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봉장어 필레(냉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미역(건조한 것), 바지락(냉동한 것), 멸치(건조한 것), 다시마(염장·냉장·냉동·건조한 것)
인정 서류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사용승인서(사단법인 한국수산물* 발급)

자료 : Kita 수출입통계

*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의 운영·관리기관

기존에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케이피쉬(K-FISH) 인증(11개 국산품목 16개 종류)’ 수출업체는 ‘케이피쉬(K-FISH) 사용승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관세청의 고시 개정에는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냉동삼치 등 3개 품목도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어 기존 인증서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게 됐다.

고광호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케이피쉬(K-FISH) 인증의 원산지 간편 인정 추가에 따른 수출 구비서류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부담이 경감된 만큼 우리 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TA 동향 ④

관세청,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신속 통관 지원”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험물품 선별 등을 위해 수입품의 종류·수량 등을 확인하는 적재화물 목록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졌다.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는 수입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 도착 전 수입 통관을 끝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수입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입됐지만 '적재화물 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적재화물 목록 심사가 업무시간 이후 끝날 경우 수수료를 내고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 날로 통관을 미뤄야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